

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9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0. 9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조정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-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
(안 제23조제2항)

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중 “60일”을 “90일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2001. 11. 1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총무과 ☎ 940-4102
입안자	총무과장	홍 덕 기
	총무담당	서 천 하
	담당자	윤 덕 규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	제23조(특별휴가)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90일 -----

파주시지방공무원특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. (안 제23조제2항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근로기준법

제72조 (임산부의 보호)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-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일부 개정(2001. 8. 14)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
-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근인력의 활용 및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